

의안번호	제 207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재 ·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7
----------	-----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중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을 반영하고,
-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계획 체계화(안 제4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시행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3조)
  -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가 15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비상설 형태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제17조)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과학인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업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기업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2. 충청북도 내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청북도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 육성기금의 용자 지원

2.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 지원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및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소재·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취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근거 마련

## 2. 비용 발생 요인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3. 관련조문

- 안 제15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나. 추계 결과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협회·협의회 육성 지원 : 100,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자체재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